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2. 23.(수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. 2. 9. 정해숙 의원 외 8명 발의 (의안번호 461호)
- 나. 회부일자: 2022. 2. 11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【2022. 2. 23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해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“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”에 대한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내용조문 변경
 - 제1조(목적)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7”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유천곤)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.12.16.자로 개정되어 2022.01.13.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 중 1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임.
- 본 조례 개정(안) 제1조(목적) 중 “지방자치법 제42조¹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²⁾”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-
- 1) 지방자치법 제42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)
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. 2. 23.(수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. 2. 9. 임현주 의원 외 8명 발의 (의안번호 462호)
- 나. 회부일자: 2022. 2. 11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【2022. 2. 23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임현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와 감사·조사 결과보고, 징계와 관련한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
- 제1조(목적) 중 「시행령 52조」를 「시행령 제53조」로,
- 제9조(감사·조사결과보고) 중 「시행령 제50조」를 「시행령 52조」로,
- 제10조(징계) 중 「시행령 제46조」를 「시행령 제49조」로, 「시행령 제47조」를 「시행령 제50조」로 변경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유천곤)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.12.16.자로 개정되어 2022.01.13.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3개 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임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제1조(목적) 중 “지방자치법”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”를 “지방자치법” 제49조³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⁴⁾로, 제9조(감사·조사결과보고) 중 “영 제50조”를 “영 제52조⁵⁾”로, 제10조(징계) 중 “영 제46조”를 “영 제49조⁶⁾”로, “영 47조”를 “영 제50조⁷⁾”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-
- 3) 지방자치법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(중략)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4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(운영 규정)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5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) ① 감사·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,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.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·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6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(제척과 회피)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
②, ③, ④항 생략
 - 7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(주의 의무)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도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단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